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1일,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SK텔레콤의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KT 6.4%, LGU 6.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47조의7제2항 및 제47조의8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현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기준 세부 항목에 인력 및 예산 등 자원 할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보호 분야 자원 확보 의무에 관한 근거가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된다는 의의가 있음.
- 현행법상 사후관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는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인증심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증심사의 경우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사후관리 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행 ISMS 인증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도입·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인증 취득 유인 저하 가능성과 강화된 인증기준에 의한 기업 신뢰 제고 등 기대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임.
- 그리고,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등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보다 심화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